

# 제34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4조의 요약

- 외상매출금·대여금·영업상 채권과 일반채권에 대해 회수불확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할 수 있는바, 채권장부가액×1%와 채권잔액×대손실적률(=대손금/직전년 채권잔액)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한도로 함.
  - 금융기관은 ① 채권잔액×(2%, 대손실적률), ②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중 큰 금액
- 대손충당금설정 및 대손금처리 안되는 채권·채무보증구상채권, 특수관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여금 등(그러나 금융기관채무보증, 신용보증사업자의 채무보증, 중소기업지원관련 수탁기업 채무보증 등은 대손설정가능함)
- 대손금발생하면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처리하여야 하며, 당연도 전액 설정, 차연도 전액 환입의 총액주의가 원칙임(차액만 전입·환입의 순액처리도 가능함).

### ●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삭 제 (2008. 12. 26)
-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⑤ 삭 제 (2008. 12. 26)
- ⑥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 제34조제1항)

### 1.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의 개관

#### 1) 본 조의 개요

법인이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선급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당해 채권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과 채권장부가액×실제대손실적률(=당연도 대손금/직전년 채권)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은 채권잔액의 100분의 2 또는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중 큰 금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대손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즉, 손금의 계속적 산입이 아니라 과세부담 이연 성격을 갖는 것으로 손금산입하려면 과세표준신고서에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합병 혹은 분할시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합병등기일의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에는 채권이 모두 인계되더라도 대손충당금은 설정한 법인자체의 것이므로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2) 대손충당금의 의의

### (1)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이유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채권은 전체적으로 보면 회수되지 않거나 대손될 확률이 경험적으로 계산되는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회수불능채권이라면 자산가치를 상실하여 별도의 회계반영이 없다면 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왜곡 표시하는 결과가 된다.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개념에 입각하여 장래의 대손가능한 금액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추산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당해 채권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세법의 권리의무확정개념으로 보면 대손충당금은 아직 의무확정 및 권리가 포기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대손실적 경험률에 의거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므로 기업회계관행을 존중하여 1% 혹은 실제 대손실적추정액 중 큰 금액 범위내에서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채권잔액×(2%, 대손실적률)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대손적립기준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하도록 본 조의 규정을 둔 것이다.

### (2) 대손충당금의 외계·세무처리

#### ① 기업회계상의 규정

다음의 기업회계기준 제57조는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비용처리하고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금액은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6.17의 2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 (1)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

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 (2)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② 법인세법상의 규정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거래채권으로 한정하고 경험적 설정률을 일률적으로 1%(은행 등 금융기관은 2%) 혹은 실제대손실적비를 계산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을 제한하고 있다.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① 설정가능채권의 최소 1%(금융기관은 2%)

본 조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금액의 1%(금융기관은 2%)와 실제대손실적비율 중 큰 금액 범위내이다.

이의 산식표현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boxed{\text{각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한도 범위액}} = \boxed{\text{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장부가액합계액}} \times \frac{1}{100} \text{ 와 실제대손실적비율 중 큰 비율} \\
 & \qquad \qquad \qquad \parallel \\
 & \qquad \qquad \qquad \left[ \boxed{\text{대 차 대 조 표 상 매 출 채 권 등}} + \boxed{\text{세 무 조 정 상 채 권 계 상 누 락 액 등}} + \boxed{\text{당 기 말 현 재 대 손 금 부 인 누 계 액}} \right] \\
 & \boxed{\text{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 \boxed{\text{①채권잔액} \times \left( \frac{2}{100} \text{ 또는 대손실적률} \right)} \text{ 과} \\
 & \qquad \qquad \qquad \boxed{\text{②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text{ 중 큰 금액}
 \end{aligned}$$

## 1) 대손충당금 설정률

### ① 일반법인은 최소 1%와 실제 대손실적비율

대손충당금 설정 최소율은 일반법인의 경우 설정대상채권장부가액의 1%이고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은 2%이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의한 추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의 실제대손실적비율이 1%(혹은 2%)보다 크면 큰 비율에 의한다. 실제대손실적비율까지 손금산입은 99년부터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이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1. 6. 3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2. 18 신설)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2009. 2. 4 개정)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009. 2. 4 개정)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에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009. 2. 4 개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009. 2. 4 개정)
  13.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성전문금융회사 (2009. 2. 4 개정)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 2. 4 개정)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2009. 2. 4 개정)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2009. 2. 4 개정)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009. 2. 4 개정)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09. 2. 4 개정)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09. 2. 4 개정)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009. 2. 4 개정)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6. 28 개정)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009. 2. 4 개정)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009. 2. 4 개정)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009. 2. 4 신설)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009. 2. 4 개정)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09. 2. 4 개정)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009. 2. 4 개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2009. 2. 4 신설)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009. 2. 4 개정)
- 32.~38. 삭제 (2009. 2. 4)
-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2009. 2. 4 개정)
- $$\text{대손실적률} = \frac{\text{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text{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산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금융기관은 주업무의 반이 고객에 대한 대출로서, 채권인 대여금이 주로 발생하고 이밖에 이에 대한 대손율이 일반법인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대손

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채권가액의 최소 100분의 2 혹은 직전연도의 실제대손실적비율(=당년도 대손금/직전기말의 채권잔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중 큰 금액까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표준비율은 별도의 세칙에 의했는데 동세칙상의 대손충당금 표준비율은 「충당금잔액/충당금요적립잔액×100」이며, '요적립잔액'은 정상분류채권 0.5%, 요주의분류채권 1%, 고정분류채권 20%, 회수의무분류채권 75%, 추정손실분류채권 100%의 합계액이다. 이런 계산과정으로 보면 금융회사는 대출이 주업으로서 부실채권 발생이 일상업무이므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은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 ② 2% 혹은 실제 대손비율 등으로 설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대손충당금을 2% 또는 실제 대손실적비율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은 상기 시행령에 의한다.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최소한도가 일반기업은 1%인데 반해 금융회사 등은 2%로 차이가 있으며 최대설정 개념은 일반기업과 금융회사 등간에 차이가 없다.

## 2)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채권

### ① 영업수익상의 채권

본 조 제1항은 외상매출금·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 및 용역제공 등 영업수익분야의 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타인에 대한 대여금이면 수익발생이 없는 채권이라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이밖에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기타의 채권도 포함되는데, 영업거래상의 선급금·미수금·선일자수표상의 채권 및 주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미수금도 포함한다. 다만,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제외한다.

다음 시행령은 기업회계상의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 (1) 영업상 매출채권

##### ① 주재화·용역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 제13조제4호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매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은 미수금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57조는 회수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권은 영업상 매출채권을 말한다.

금융업은 이자수입의 미수이자, 부동산업은 부동산판매미수금 등이 영업상 외상매출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금융업이 아닌 일반법인의 금융수입 미수이자나 부동산판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고정자산 및 부동산판매미수금 등은 주영업분야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받을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는 있다.



② 리스회사의 미회수리스료와 미수이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는 리스자산과목으로 금융리스채권 및 운용리스자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리스업회사의 대손충당금설정가능채권은 금융리스채권 미회수잔액, 미수이자 및 미회수운용리스료를 포함한다.

(2) 대여금 및 비영업대여금

금융기관의 모든 대여금도 주영업상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이를 비영업대여금, 비영업대여금이라 한다.

비영업대여금도 대여금으로 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데, 종전에는 법인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에 한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했었다. 즉, 대여로 인하여 법인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무상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대여채권이 해당된다.

그러나 일반법인의 대여금관련 미수수익은 열거항목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3) 영업상 채권 · 타인대여금 · 미수금

① 기업회계상 영업수익대응채권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는 외상매출금과 비영업대여금 이외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 및 제반 미수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선급금, 미수금,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② 비영업적 거래채권배제

영업수익과 대응되는 채권이 아닌 경우는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상 영업수익에 관련된 채권이 아니고 영업외 수익이나 특별항목에 관련된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안된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이러한 비영업적 거래항목은 거래가 빈번치 않고 경상항목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이므로 대손이 되는 경우도 드물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은 손금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다는 형식을 취하면 설정가능하다.

### ③ 영업상의 받을어음

영업수익거래시 외상채권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상영업거래상 받을어음 등은 외상매출금과 그 성격이 동일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제반 미수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등도 영업상 채권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며 기타 영업상의 모든 미수금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영업상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과 관련하여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설정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영업관련없는 행위관련 미수금은 설정대상이 아니다.

## (4) 본조에 의한 대손금부인누계액

시행령 제61조제2항은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채권으로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바, 여기서 ‘장부’는 기업회계상의 장부를 근거로 한 개념이지만 채권가액은 세무상의 개념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대손처리하여 장부상 없앴다 할지라도 세무상 대손요건미충족으로 부인되어 유보되고 있다면 당해 부인된 금액도 ‘장부상 채권의 합계액’속에 포함된다. 즉,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액에 포함한다.

## (5) 동일인 채권·채무 미상계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뿐 아니라 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은 영업상의 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자간에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법인이 기업회계상 적극적으로 상계하여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상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채권총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러나 약정상 상계하기로 하였다면 상계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

여야 한다. 관련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손충당금 설정불가능 채권**

① 비영업분야의 계상채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영업상의 채권이 아니라면, 그 성격이 채권이고 또한 대손예상액을 산정할 수 있거나 대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지라도 대손충당금을 미리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순자산감소이므로 대손금으로는 손금산입이 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야 한다.

② 영업범위 이외의 채권

수탁·대리업 등은 업무수행결과 수탁·대리수수료 등을 받는데 위탁 및 위임인에 귀속될 채권은 비록 자기가 회수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자기의 영업상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외국법인 사업폐쇄시의 채권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규정은 당해 연도에 설정하고, 차년도에 미사용분을 환입하는 1년단위 계산방법의 징수이연제도이므로 다음 사업연도라는 개념이 없다면 더 이상 이연될 필요가 없어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법인폐쇄나 청산법인 등은 차년도 개념이 없으므로 대손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④ 당초에 장부상 미반영된 채권

기업회계상 계상된 적이 있는 채권은 시행령상의 장부상 채권가액에 포함되

지만 처음부터 장부에 계상됨이 없이 세무조정상으로만 계상된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법인의 장부에 일단 계상되었다가 이후 기업회계에 따라 대손처리한 채권 중 세무상 부인되어 유보금액으로 남아 있는 대손금부인누계액은 충당금 설정대상금액에 포함되는바, 이러한 대손금부인액은 본질상 기업회계상의 법인장부를 경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⑤ 현재가치할인차금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즉 채권·채무조정시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성격이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한도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채무보증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법 제34조제3항)

#### ① 채무보증구상채권·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제외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으로 보지도 않고, 이러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판명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은 영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주요 재화·용역제공 관련해서 발생하였더라도 수익발생과 직접 관련이 적다고 보는 것이며, 특히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성격으로 분류되는 채권은 세법상 특별히 규제대상이므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 ②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경우도 손금불산입한다.

#### ③ 채무보증업이 주요 사업인 경우의 구상채권 등은 설정가능

각종 금융기관 등은 금융업의 일환으로 채무보증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구상채권,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위탁회사·증권거래법상의 증권회사의 채무보증관련 구상채권,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채무보증구

상채권은 주요 영업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며, 대손금으로도 인정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리화 계획이나 기준에 의거 인수하는 보증채무관련 구상채권, 국제경쟁력강화 위한 채무보증구상채권, 중소기업 사업지원관련 위탁기업체가 수탁중소기업을 위한 채무보증의 구상채권 등도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으로 보며 관련 대손금도 손비인정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2010. 2. 18 개정)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 7. 21)

## 3.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1) 손금산입을 위한 결산반영

#### (1) 총액주의에 의한 비용처리원칙

##### ① 재무제표에 적극적 손금 반영

대손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아직 권리가 확정적으로 포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1%(금융기관은 2%) 혹은 실제 대손실적비율 중 큰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용인된다. 대손충당금으로 손금계상, 즉 결산반영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인의 결산상 장부에 비용이나 손실로 계상되어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법인이 재무회계상의 분개처리에 의거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과세표

준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조정만 하는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한도초과액은 일단 부인 유보한 후 나중에 추인하지만 당기의 한도부족액은 적게 계상한 것으로 종결되므로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으로 추인하여 주지는 않는다.

## (2) 대손충당금전입액과 완입액의 상계

### ① 상계·보충법도 인정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78은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제57조제2항은 “대손추산액에서 기존의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고 차감순액의 기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회계학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환입하는 방법에는, 장부상 직전 사업연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할 금액을 다시 손금에 계상하는 총액방법과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 총대손충당금설정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보충법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현행의 기업회계상 일반회계는 원칙적으로 총액법이지만 대손상각비는 보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행 규정에서 대차대조표상 대손충당금만 계상되면 이의 회계방법이 손익계산상 순액주의 추가반영인지, 총액주의 즉 총액수익환입후, 총액비용반영인지 특별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법도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총액법에 의한 손금 및 익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로 상계한 차액만 계상하여도 이는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하다고 보아 각각의 총액을 손금과 익금으로 추가반영한 것으로 본다. 다음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회계상의 처리방법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 관련법령

### ▲ 시행규칙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

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2) 대손충당금 · 대손금조정명세서 제출 (법 제34조제7항)

### (1) 대손금 등 조정명세서 제출의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려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작성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⑦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⑨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사 례】

- ① 사업연도 : 2010. 1. 1~12. 31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 ② 매출채권 등 내역
  - 받을 어음 : 41,000,000(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 포함)
  - 외상매출금 : 154,000,000(부가가치세 14,000,000 포함)

계 : 195,000,000

- ③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 장부상 기초충당금 2,300,000(전기부인액 300,000포함)

- 다라(주) 당기 대손금상계액(12/31) : 400,000(미확정 대손금 100,000포함)
- 당기 손금계상액 50,000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1,900,000원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충당하고 잔액만 손금계상함)

④ 대손실적율 : 0.9%

**【세무조정계산】**

①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

- 받을 어음 21,000,000원(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원 제외)
- 외상매출금 154,100,000원(당기대손금상계액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을 포함)

---

계        175,100,000원

② 한도액 계산 = 1,751,000원  $(175,100,000원 \times \frac{1}{100})$

③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

- 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 2,300,000원
- 총당금 부인 누계액(-) : 300,000원
- 당기대손금 상계액(-) : 400,000원

---

계                        : 1,600,000원

④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

- 보충액 : 1,900,000원
- 보충할 금액 : 1,600,000원

---

계        : 300,000원……… 과다보충액 발생

⑤ 조정내용 정리

- 당기대손금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199,000원 손금불산입
- 과다보충액 300,000원 손금산입



[별지 제34호 서식] (2010. 3. 31 개정)

사업연도	2010. 1. 1. ~ 2010. 12. 3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주)안건
	사업자등록번호			

1. 대손충당금 조정											
손금산입액 조정	① 채권잔액 (②의금액)	② 설정률			③ 한도액 (①×②)	회사계상액			⑦ 한도초과액 (⑥ - ③)		
	175,100,000	(-) 1(2) 100	(-) 실적률 ( 6.9% )	(-) 적립기준 ( )	1,751,000	④당기계상액 50,000	⑤보충액 1,900,000	⑥ 계 1,950,000	199,000		
익금산입액 조정	⑧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⑨ 기중 충당금 환입액	⑩ 충당금 부인 누계액	⑪ 당기대손금 상계액 (⑦의 금액)	⑫ 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	⑬환입 할금액 (⑧-⑨-⑩-⑪-⑫)	⑭ 회사 환입액	⑮ 과소환입 ·과다환입 (△)(⑬-⑭)			
	2,300,000		300,000	400,000	1,900,000	△300,000		△300,000			
채권잔액	⑯ 계정 과목	⑰ 채권잔액 장부가액	⑱ 기 말 현 재 대손금부인누계	⑲ 합 계 (⑰+⑱)	⑳ 충당금설정 제외채권	㉑ 채권잔액 (⑲ - ⑳)	비고				
	받을어음	41,000,000		41,000,000	20,000,000	21,000,000					
	의상매출금	154,000,000	100,000	154,100,000		154,100,000					
	계	195,000,000	100,000	195,100,000	20,000,000	175,100,000					
2. 대손금조정											
일자	㉒ 계정 과목	㉔ 채권 내역	㉕ 대손 사유	㉖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고
					㉗ 계	㉘ 시인액	㉙ 부인액	㉚ 계	㉛ 시인액	㉜ 부인액	
12.31	의상매출금	다라(주)	시효소멸	40,000	40,000	300,000	100,000				시효미완성 100,000
	계			40,000	40,000	300,000	100,000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II. 대손충당금 사용·상계 및 익금산입·환입

(법 제34조제8항)

### 1.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과 먼저상계·사용후 잔액은

**익금** (법 제34조제4항)

#### ① 대손충당금과 우선상계

기업회계기준 제57조제3항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손이 발생한 때는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도록 하는 뜻이다. 따라서 당기에 발생한 대손금을 직접 당기손익계산 비용으로 계상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본 법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에 대손금이 발생하면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며 상계후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에 익금산입한다고 제4항이 규정하고 있다(종전에는 시행령 규정이었으나 법률 규정으로 올림).

#### ② 대손충당금상계 혹은 손금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

회수불능채권액, 즉 대손금은 당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개념에 대하여 민법, 상법, 기타 여러 법상 회수불능의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거나 소멸시효경과분을 말한다.

#### ③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유예(조세특례제한법 § 104의 23)

2010. 12. 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감소되어 일시 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산입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 대상법인 및 적용방법(선택사항)

○ 201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법인이 적용대상이다.

○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익금불산입액 계산

**[익금불산입액]**

=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다) 익금유예 및 환입방법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며, 익금유예된 사업연도 이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보다 큰 경우 익금불산입한 유예금액과 상계한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증가분과 상계한다는 뜻이다.

잔액은 201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관련법령**

❶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27 신설)

1.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2.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액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27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27 신설)

### III. 합병분할시 대손충당금의 승계 (법 제34조제6항)

#### 1. 합병분할시 대손충당금의 승계조건

##### ① 인계시 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으로 간주

합병이나 법인분할시 해산한 그 내국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가지고 있는 당해 대손충당금 금액이 합병 후 존속 및 분할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인계된다면 이를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혹은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대손충당금이 그대로 인계되면 합병법인 혹은 분할합병법인은 이 금액을 합병일이 속한 사업연도말에 대손충당금의 환입으로 익금산입한다. 그러나 합병법인에 인계되지 않은 경우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환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그대로 인계되면 대손충당금 전입 및 환입의 일반절차를 합병법인이 취하면 되고 인계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이 청산시 일시환입하면 된다.

##### ② 대응채권과의 동시인계

여기서 대손충당금이 합병법인 및 분할합병법인에게 인계되기 위해서는 당해 대손충당금과 이의 대응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2. 포괄양수·도 거래시 승계불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양수·도시에는 대손충당금 등의 제반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합병과는 달리 어떤 조건이 있어도, 대손충당금 등의 인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포괄양수·도라는 행위는 제반권리의 이전은 아니므로 세무상 개념까지는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밖에 양도한 법인입장에서 손금에서 부인된 대손충당금이라면 양수법인 입장에서 향후에 어떤 사유로도 손금에 산입되거나 추인될 수는 없다. 양도법인 자체의 향후 손금추인 등으로 대응되며, 양수법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